

**투자위험등급:**  
**1 등급**  
**[매우높은위험]**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유비에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4.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kofia.or.kr](http://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ubs-hana.com](http://ubs-hana.com)) 홈페이지 참조
5. 작성 기준일 : 2015년 1월 30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15년 2월 6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kofia.or.kr](http://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 전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본문 중 전환에 관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일부 환매가 허용되지 않으며 가입 후 5 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 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증가할 수 있음)하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자본소득을 추구합니다.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하나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투자하고, 잔여 신탁재산 중 10% 이하로 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형)입니다.

②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6 및 동법 시행령 제 93 조의 2 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서 서민과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투자신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투자 비율
하나 UBS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주식]	90% 이상

※ 단, 위의 모투자신탁 외의 다른 모투자신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부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합니다.

\* ‘매일의 보유비율’을 의미하며 “모펀드의 해당 주식편입비율 × 자펀드의 모펀드 투자비율” 로 계산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하나 UBS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주요투자대상	주식 70% 이상, 채권 30% 이하
	투자목적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경제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국내주식 등에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재산을 국공채, 신용등급 A- 또는 그 이상의 등급을 가진 우량 채권, 예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li> <li>- 투자가치에 초점을 둔 ‘코어전략’ 수행을 통한 시장대비 초과수익 추구하며 엄선된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li> <li>-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의 최소화를 추구합니다.</li> </ul>

#### 2) 유동성자산(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자산총액의 10%이하

※ 단, 대량환매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90%를 하회할 수 있습니다.

(2)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100%**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 수익률 X 10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은 적극적 운용을 통한 초과수익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지수나 참고지수를 단순히 추적하는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주식 등의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기구의 성과가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위험관리

- 조직적 리스크관리로 펀드 손실 가능성 최소화 추구
  - 리서치팀과의 연계강화로 매니저 독자판단에 따른 오류 가능성 최소화 추구
  - Risk Control 팀, 컴플라이언스팀 등 전담조직에 의한 체계적 펀드 위험 관리

3. 주요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b>투자원본 손실위험</b>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b>시장위험 및 개별위험</b>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b>주식가격 변동위험</b>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b>이자율 변동위험</b>	일반적으로 채권 등 채무증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b>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b>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b>파생상품투자 위험</b>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거나, 위험자산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2015.1.30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이창영	1978	차장	13개	5,161억	-서울대 기계공학과 -애널리스트 2년 -운용경력 8년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현재 동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없습니다..

6. 투자실적추이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신규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선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종류 C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500%	0.50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800%	0.350%	
신탁업자보수	0.030%	0.030%	
일반사무관리보수	0.015%	0.015%	
보수합계	1.345%	0.895%	
기타비용 <sup>주1)</sup>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sup>주2)</sup>	1.345%	0.895%	-
증권거래비용 <sup>주3)</sup>	실비	실비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증권거래비용은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C	137,844	434,554	761,677	1,733,792
종류 C-E	91,725	289,164	506,841	1,153,713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 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가입자격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매년 6.30.이전에 가입 시에는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가입 가능함
가입기간	2015.12.31.까지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
저축계약기간	10년 이상 * 단 5년 이내 해지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한도로 추징
가입한도	연간 600만원 이내 (모든 금융회사에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합계액을 말함)
세제혜택	납입액의 40% 공제(연 240만원 한도). 다만, 소득공제를 통해 감면받는 소득세액의 20%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별도부과. 또한 10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의 인출 시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감면세액추징	가입 후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원금·이자·배당 등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총 누계액에 일정비율(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추징(지방소득세 포함시 증가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2.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p>라.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p> <p>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p> <p>바.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p>
<p>*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의2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저축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주민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라.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

공시장소	<p>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a href="http://www.ubs-hana.com">www.ubs-hana.com</a>),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p>
------	---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2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 오후 3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T일	T+1일	T+2일
자금납입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매입청구일)	(기준가적용일)

3)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1일		T+3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오후 3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3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T일		T+2일	T+3일
환매청구일		기준가적용일	환매대금지급일

#### 4. 전환절차 및 방법

가. 전환 절차, 방법 및 전환시 기준가격

(1) 수익자는 투자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 내에서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전환청구 시 수익증권 일부에 대한 전환은 불가하므로,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전환청구만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수수료나 전환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1) 하나UBS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2)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3) 하나UBS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2) 전환시 기준가격

전환전 투자신탁	전환후 투자신탁	전환전 투자신탁 환매기준가격 적용일		전환후 투자신탁 매입기준가격 적용일		영업일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15시 이전	15시 경과후	
코리아 장기소득공제[주식]	타투자신탁	제2영업일	제3영업일	제4영업일	제4영업일	한국거래소 개장일

- 투자신탁간의 전환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5시 이전까지로 하되, 15시 경과후의 취소는 전환청구일 당일 17시 이전까지로 합니다.

####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펀드	내용
인덱스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 [주식]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KOSPI200 인덱스 수익을 추종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KOSPI 200 지수의 수익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코리아 장기소득공제 전환형 증권자투자신탁 [주식혼합]	투자신탁재산의 50%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국내주식 시장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하며, 50%이하를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III. 요약 재무정보

신규펀드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